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제2조의2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20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장 또는 대한한약사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회장은 약사, 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내용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연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에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기 본 인 적 사 항	성명	면허번호
	직종	[] 약사 [] 한약사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 업 상 황	활동 여부	([] 상근, [] 비상근) 약국 근무 ([] 상근, [] 비상근) 의료기관 근무 [] 약국, 의료기관 이외 근무 [] 미활동
	약국 근무자	근무 구분 [] 약국개설자 [] 근무약사 [] 근무한약사
		약국 명칭
		약국 주소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조제업무) [] 한방병원 [] 한의원
		근무 의료기관 명칭
		근무 의료기관 주소(원외탕전실 포함)
		약국·의료 기관 이외 근무자
	근무지 명칭	
	근무지 주소	

연 수 교 육 및 신 고 관 련	최근 신고 연도
	연수교육 이수상황 총 ()시간 이수 의무 중 ()시간 이수

「약사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중앙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연수교육 수료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약사법」 제79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 나. 법률 제1720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상근"이란 1개의 약국에서 주 5일 동안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인 경우에는 "약국 근무자"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약사 또는 한약사인 경우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 이외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5. "약국 명칭"란 및 "약국 주소"란에는 약국에 상근하는 약국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되, 약국 비상근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약국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6.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된 탕전실에 근무하는 한약사의 경우 "근무 의료기관의 주소"란에 탕전실의 주소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7. "의약품등"이란 의약품·의약외품을 말합니다.
8.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연수교육(의무이수 시간: 연간 6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자	성명				면허번호		
	직종						
		[] 약사		[] 한약사			
신 청 사유	면제 신청 대상 연도						
	구체적 면제사유(「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 1.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2. 군 복무 중인 자 [] 3. 학교에 재직중인 자 [] 4. 대학원 재학생 [] 5.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또는 의약품 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6.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 []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수교육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 토	→	사실 확인 등	→	기안 결재	→	통 보
처리기관: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 연수교육 담당 부서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연수교육 면제 내역: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귀하는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① 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신고의 내용·방법·기간,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시작 6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제2조의2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20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번호 3. 취업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장 또는 대한한약사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① ~ ⑤ (생략)
<신설>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회장은 약사, 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내용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연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에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연수교육 면제
대 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연
수교육 면제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연수교육 면
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